



기 술 정 보



월간 기술정보지 통권 제51호 (2015년 11호)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발행



통영 「사랑대교」 개통

목 차

<p>■ 건설관련 소식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책 추진 - 경남도, 서부청사 개청 초읽기 - 경남도, 항공MRO사업 힘찬 날개짓 - 경남도, 내년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전 준비작업 착수 - 경남도, 농지 불법전용 교차단속 실시 - 2015년 경남도 우수주택을 찾습니다. - 지적재조사 추진과정 인터넷으로 "한눈에 확인" - 통영 『사랑대교』 개통 - 김해시, 공사장 가설울타리 화려한 변신 - 남해군, 물건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추진 - 거제시, '대곡~황덕' 연결도로 개통 	<p>■ 지식정보 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 안전점검·진단 업체 퇴출한다. - 욕실 바닥 미끄럽지 않게 "실내건축기준"마련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7억원미만 공사까지 확대 - 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 주거용 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 부담 줄어든다. -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추진 - 부처 간 협업으로 건설현장 안전취약지대 없앤다. -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 <p>■ 최신법령 및 법령해석 20</p> <p>■ 신기술 정보 27</p> <p>■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현황 28</p> <p>■ 기술인 나눔 정보 30</p>
---	---

경남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책 추진

- ▶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연재난 사전대비
- ▶ 12월 1일부터 3개월간 겨울철 재난대책기간 운영

경남도는 겨울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하여 도민불편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도로 정체·고립 등 설해 피해예방을 위한 도로제설과 교통대책, 비닐하우스 등 농·축·수산 시설물 피해예방을 위한 「2015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으로 정하여 시군과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사전대비로 겨울철 자연재난에 적극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겨울철 재난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소관 분야별 사전대비 업무 추진에 대해 매주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미비점은 11월말까지 보완 조치하는 등 예방위주의 방재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인명·재산피해 예방과 도민의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정하고 한발 앞선 상황관리체계 유지,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는 물론 선제적 조기경보체계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겨울철 사전대비는 평상시, 사전대비단계, 비상 1,2,3단계 등 비상근무 근무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관리와 대응체제를 확립하고 폭설시 교통취약·두절예상지구의 사전대책을 수립, 도로관리

유관기관과 연계한 제설작업을 적기에 추진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농·축·수산시설 피해경감대책으로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이 시설기준 미달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기준에 적합한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한파대비 피해경감을 위해 서민생활 안정대책 및 동절기 전기·가스 등 안전을 강화하고, 도민들에게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태만 경남도 재난대응과장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민의 관심과 협조로 완벽한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을 설정 운영한 결과, 재해 없는 여름을 날 수 있었다.”며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자료 : 도 재난대응과 자연재난2팀당
(055)211-2835

경남도, 서부청사 개청 초읽기

▶ 최구식 서부부지사, 수목원에서 서부권 부단체장 회의 열어

최구식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22일 산림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서부권 9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서부권개발본부장, 산림환경연구원장, 환경정책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서부권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산림환경연구원 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부청사 건립 추진상황 및 개청에 따른 서부권 시군 협조 사항, 가을철 산불예방 대책,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 방제, 도 대표 산림휴양 편백단지 조성 추진 등 도 주요 당면현안과 서부권 시·군의 주요건의사항, 서부청사 개청식 준비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를 주재한 최 부지사는 “서부청사 소수선 공사 진행이 가속도가 붙어 11월 말에는 준공 될 예정이다”며 “서부청사 개청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서부권 시군에서 개청 준비에 적극 협조해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바란다.”며 서부권 시군이 개청 준비에 힘을 보태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환경산림국과 환경산림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부권 시군은 특히 산지가 많고, 수목들이 풍부해 가을철 산불이 일어날 확률이 많다”며 서부권 시군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산불 조기발견으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소나무의 AIDS라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 방제’를 위해 서부권 시·군의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부지사와 서부권 부시장·부군수는 산림환경연구원장(김황규) 안내로 산림환경연구원 현장을 둘러보고 남부지역 산림연구와 새로운 임업기술 개발·보급 등 21세기 산림창출의 중심역할을 하는 연구원 및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자원의 보전·증식, 산림 병충해 예찰·진단·처방,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등 도내 환경산림 업무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9개 시군 부시장·부군수는 “서부청사 개청은 경남 전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므로 서부권 시군들은 서부경남 성장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공적인 서부시대 완성에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 나갈 것”라며 서부청사 개청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서부청사추진단 서부청사팀당
(055)211-6013

경남도, 항공 MRO사업 힘찬 날개짓

▶ 21일 서울공항서 AAR社↔경남도↔KAI간 양해각서 체결식 가져

경남도는 미국의 AAR사, KAI와 지난 2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되고 있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경남 항공 MRO사업 투자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경남도에서 사천 항공 MRO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글로벌 항공정비업체와의 제휴를 위해, 금년 초부터 AAR사와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지난 8월말 KAI와 함께 미국 본사를 방문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번에 경남도, KAI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미국의 AAR사는 6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북미 1위 세계 3위의 항공MRO 전문업체로, 2014년 포브스지 선정 미국내 신뢰 할 수 있는 100대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항공 MRO 부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항공정비 전문 기업이다.

하성용 KAI 대표는 “AAR사와 긴밀한 협력 하에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MRO 사업화를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며, MRO산업에 대한 경남도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역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을 거듭 강조하며, MRO사업으로 발생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의 발전을 지역경제와 나누며 상생의 본보기가 되고, 거시적 차원에서는 창조경제의 성공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최구식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세계적인 항공 MRO 전문업체인 AAR사가 사천지역의 우수한 입지 여건 및 KAI의 사업 능력을 높이 평가한 사항으로, 정부에서도 항공MRO사업 대상지로 KAI가 있는 사천지역이 최적의 입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우리나라 항공운송 분야는 세계6위, 항공기 제조분야는 세계1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항공MRO 시장의 점유율은 미미한 상황으로, 항공정비업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 잠재력이 충분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경남도와 AAR사, KAI가 힘을 합치면 경남 항공MRO사업 추진에 확실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고 말했다.



■ 자료 : 도 국가산단추진단 항공우주팀당
(055)211-3124

경남도, 내년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전 준비작업 착수

▶ 올해 167억원 추가 확보, 내년도 국비 697억 사상 최대 확보 전망

경남도는 내년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비가 사상 최대의 국비 확보가 전망되는 가운데,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철저한 사전준비에 착수했다.

이에, 경남도는 27일 경남개발공사에서 김대형 경남도 도시계획과장, 창원시,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의 사업관련 담당과장 등이 참석하여 내년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다.

도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시군이 직접 시행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에 대하여 조기발주를 위한 단계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신규사업 지구에 대하여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단계별 설계·시공 병행 추진) 방식을 도입하는 등 편입토지에 대한 선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위탁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도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에는 ▲창원 동전 산업단지 83억, ▲양산 석계2 산업단지 34억, ▲김해 테크노밸리 50억(금년도 정부 추경예산) 반영 등 총 16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6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천성봉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도 관계자가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에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6개 지구(▲사업대상 : 창원 동전, 김해 테크노·사이언스·이지, 사천 종포, 양산 석계2)에 사상 최대인 697억 원을 확보할 전망이라고 말했다.(2015.10.23 제337회 국토교통부 상임위 정부예산(안)자료)

김대형 경남도 도시계획과장은 “산업단지 진입도로 총사업비 추가 확보와 내년도 사업비의 사상최대로 확보 예상되는 만큼 차별화된 산업단지 건설추진과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부양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사업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 : 도 도시계획과 산업단지관리담당
(055)211-4253

경남도, 농지 불법전용 교차단속 실시

- ▶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18개 시·군, 2개 경제구역청 대상으로 실시
- ▶ 단속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기관)간 교차단속

경남도가 농지불법전용 및 불법 용도변경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농지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되며, 단속대상은 18개 시·군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로, 단속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및 기관간 교차단속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에서는 식량생산 공급기반 확보, 농지의 보전 의식 향상, 준법질서 확립을 통한 농지 불법 전용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한 행위, ▲ 신고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전용하는 행위, ▲ 허가 후 용도변경 승인 없이 용도변경한 행위, ▲ 농지전용 허가조건 위반행위, ▲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 ▲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행위, ▲ 복구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복구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도에서는 단속기간 중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를 병행하며, 상시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도는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적법한 전용절차 없이 야적장 및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행위 43건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화물차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1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다.

농지불법전용 단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경남도 농업정책과(211-6231~5) 또는 시·군 농지관리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 : 도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
(055)211-6234

2015년 경남도 우수주택을 찾습니다.

- ▶ 11월 20일까지 해당 시·군 건축부서에 신청, 단독주택 40동 선정

경남도는 우수주택을 발굴하여 도내 주택의 시범모델로 제시하는 『2015년 경상남도 우수주택』을 선정한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0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40동 이내로 현재까지 총 598동이 선정되었다.

올해 선정대상은 2015년도에 경남도 각 시·군에서 준공된 단독주택 중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건립되고 경남도 권장사항인 경사(조형)지붕, 친환경 건축기법 등이 사용된 아름답고 모범적인 주택으로 선정동수는 40동 이내이다.

신청자격은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설계자이며 건축물이 소재하는 당해 시·군 건축부서에 11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시·군 건축부서에서는 현장조사 등 자체 심사 후 시부 3~4동, 군부 2~3동 이내의 우수주택을 도에 추천하면 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나 별도 구성된 심사단에서 심사하여 12월 초 최종 40동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수주택으로 선정이 되면 설계자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건축주에게는 동판으로 제작한 경상남도 우수주택 인증패를 수여한다.

또한 선정된 우수주택은 판넬로 제작되어, 2016년 4월부터 시·군청 로비, 민원실 등 도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서 시·군 순회전시를 실시하고 우수주택 책자로도 발간될 예정이다.

이준선 경남도 건축과장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와 주거문화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우수주택 선정에 건축주 및 설계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자료 : 도 건축과 친환경건축담당
(055)211-4325

지적재조사 추진과정 인터넷으로 “한눈에 확인”

▶ 지적재조사 대국민 공개 「바른땅 시스템」 서비스 개시

경남도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바른땅 시스템 (<http://www.newjijuk.go.kr>)」을 10월 중순부터 서비스 한다.

그동안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내 땅이 포함된 경우라도 담당부서에 문의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사업의 추진상황을 알 수 있었으나, 「바른땅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개인 및 법인의 토지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사업지구지정,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조정금 내역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관공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하게 되어 양방향 커뮤니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바른땅 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대국민공개시스템을 통한 양방향 소통으로 정부3.0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자료 : 도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
(055)211-4425

통영 『사랑대교』 개통

▶ 지리산권과 칠현산을 두르는 최고의 관광코스 탄생

경남도는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시행한 통영시 사랑면의 상·하도를 연결하는 교량 『사랑대교』가 착공 5년 만에 완공되어 30일 사랑면 금평리 진촌마을에서 준공식을 개최한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0인 이상 거주하는 섬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기반시설을 확장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섬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하고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랑대교』는 2010년 4월 착공하여 5년 5개월의 기간을 거쳐 사랑도의 수려한 자연과 어우러져 연장 530m 폭11.5m의 사장교이다.

통영시 가장 서쪽 해역에 위치한 사랑도의 윗 섬과 아랫 섬을 잇는 육지 길이 개통되면서 사랑 주민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었으며, 윗 섬의 “지리산”과 “옥녀봉”에서 아랫 섬의 7개 봉우리 “칠현산”을 연결하는 섬 일주 관광코스가 구축됨으로써 사랑도를 찾는 관광객 증가는 물론 경남과 통영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현철 경남도 서부권개발사업본부장은 “사랑대교뿐만 아니라 우리 도 한려 해상의 수려한 도서를 적극 발굴 개발하여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자료 : 도 서부권전략사업과 지역개발담당
(055)211-6095

김해시, 공사장 가설울타리의 화려한 변신

▶ 공사용 가설울타리에 다양한 디자인 접목

김해시의 공사현장 가설울타리가 연일 화제다. 언제부턴가 가설울타리에 디자인을 접목하기 시작하더니, 디자인에 김해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는 경관 조명까지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부원역사 앞 (옛)새벽시장 부지의 주상복합 현장을 가보면 흡사 김해가야테마파크의 포토존 앞에 서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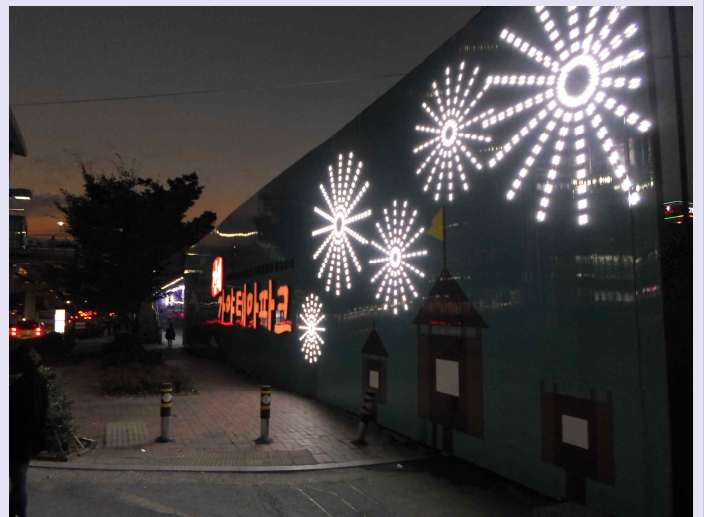
이번 가설울타리 디자인은 김해시 디자인건축과에서 ‘가야테마파크’를 주제로 디자인하는 것으로 사업자에게 제안하고, 두 달에 걸친 디자인 협의를 통해 탄생되었다.

이런 김해시의 행보에 시민들의 호응은 뜨겁다. 자칫 삭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공사장 가설울타리가 멋진 벽화로 ‘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53만 인구의 김해는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대형 건축공사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 수많은 공사 현장이 있는 만큼 이번에 시작되는 공사 현장에는 어떤 디자인이 적용될지 기대가 앞선다.

한편, 김해시에서는 2009년 공사장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 시행을 시작으로, 사업자의 디자인 비용을 덜기 위해 2013년에는 시에서 가설울타리 디자인 표준안을 직접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설울타리를 활용하여 가야테마파크 등 도시를 홍보하고 있다.

김해시 디자인건축과 관계자는 “공사현장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제야 결실을 맺는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자료 : 김해시 디자인건축과
(055)330-3344

남해군, 물건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추진 '순항'

남해군은 지난해 7월 총 200억 원 규모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물건 다기능어항 (피셔리나형) 개발 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올 4월 기본설계 중간보고와 6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 8월 26일 기본설계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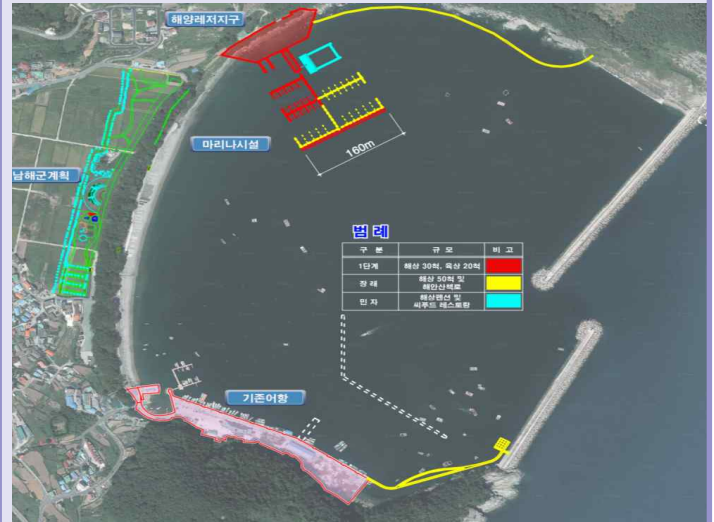
기본설계 최종보고에 따르면 물건 다기능 어항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186억 원을 투입해 마리나 계류시설, 마리나부지 조성, 어항 부지정비 등을 실시하고 데크 산책로와 경관 조형물은 향후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본설계안 확정에 따라 향후 실시설계, 인허가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에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군은 향후 사업으로 예정된 데크 산책로 및 경관조형물 설치사업은 마리나 시설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 이번 공사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남해 물건항이 수산 기능과 해양레저 기능이 어우러진 피셔리나 항으로 새롭게 탈바꿈해 어항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사업으로 예정된 데크 산책로 및 경관조형물 설치사업은 사업시행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해 이번 공사에 꼭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 : 남해군 해양수산과
(055)860-3374

거제, '대곡~황덕' 연결도로 개통

5일 거제시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하청면 대곡리 마을에서 권민호 시장을 비롯한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곡~황덕 연결도로 개설공사 준공식을 한다.

이 연결도로는 오는 2016년 3월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공기단축을 통해 일정이 앞당겨졌다.

106억 원을 들여 총연장 527m, 너비 5.5~7.5m 규모로 지난 2011년 4월에 착공했다.

해상교량은 길이 263m의 '닐센아치교'로 세워졌다.

황덕도 주민들의 숙원이던 이 교량 개통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개발 촉진, 관광 활성화, 물류비 절감 등이 기대된다.

현재 황덕도는 21가구 39명이 사는 낙도로 본섬 나들이는 인근 칠천도까지 배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 자료 : 거제시 도시개발과
(055)639-4613

부실 안전점검·진단 업체 퇴출한다

- ▶ 불법하도급 벌칙 강화 등 「시특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부실 안전점검·진단을 한 업체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10.2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안전점검·진단 용역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 소홀과 미약한 처벌로 인해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진단 사례가 빈발하게 됨에 따라,
 -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하도급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진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하도급 제한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규정 마련
 - 시설물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점검·진단에 대하여 불법 하도급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하고,
 - 국토부장관 등은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실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함

- ② 하도급 제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 안전점검·진단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③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확대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뇌물수수 벌칙적용 대상으로 추가
- ④ 시정명령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규정 마련
 - 불성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공중에 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우리 부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긴밀히 협업하여, 국민안전을 위해하는 불법하도급 및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 * 부패척결추진단 브리핑(2015.4.7.)
 - “국민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7

욕실 바닥 미끄러지지 않게, “실내건축기준” 마련

▶ 유리난간, 샤워부스는 안전유리로, 거실 외에도 불연성 재료 사용

□ 건축물 안에서 미끄러짐이나 끼임, 충돌 등의 생활안전사고를 방지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10월 28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최근 들어 건축물 거주자가 생활 중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샤워 부스가 부서져 몸을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이는 현재의 건축물의 복도 너비, 마감재료 등 구조체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되고 있지만, 건축물의 실내시설 기준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건물 실내 인테리어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동 기준은 바닥면적이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여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및 분양법을 적용받는 30실 이상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 그 외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 시설 용도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의무대상인 경우로서 동 기준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 이번에 제정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실 외의 부분에도 벽, 반자 등 불연성 재료 사용

○ 현재 거실에서만 적용하고 있던 불연성 재료 사용 의무화를 앞으로는 거실용도가 아닌 위생,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비슷한 시설의 벽 및 반자 부분의 마감에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불연재료(콘크리트, 벽돌, 유리 등), 준불연재료(석고보드, 미네랄 텍스 등), 난연재료(난연합판, 난연프라스틱판 등)

계단, 욕실 등 바닥마감재 기준

○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사용하여야 하며, 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으로 하여야 한다.

*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시 KS기준(미끄럼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하여야 한다.

안전난간 기준

○ 추락방지 등을 위해 난간은 어린이 등이 올라갈 수 없도록 난간살을 세로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난간 살의 간격은 10cm이하, 난간의 높이는 120cm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로 된 난간은 파손시에도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완충재료 및 충돌사고 방지 기준

-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있는 건축물의 벽체, 복도 등 내부공간의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이상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하여야 하며,
-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리문에는 식별 표지등을 설치하여야하며,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파손시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출입문 등 기준

- 실내 출입문은 유효너비를 0.8m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의 개폐에 의한 끼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문 등 모서리면은 손끼임 방지 완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일부 마감재 등 공사비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비용편익보다는 실내건축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1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

- ▶ 종합·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4월 10일 입법예고에 대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3억→10억원)”을 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 입법예고안에 대해 종합전문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지난 3개월간(6~8월) 종합·전문 업계와 관계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토회의(4회)를 걸쳐 건설업역 유연화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조정안>

- ◆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되,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입찰기준이 7억원으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범위임
- 다만, 종합·전문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기술자 보유, 경영상태 등)등을 정비한 후 추진
- 이와 함께, 기존 소규모 복합공사(3억원 미만) 범위도 4억원까지 확대가 필요하며, 연내 우선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된 검토회의를 통해 정부와 양 업계가 상호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 앞으로도 업역체계 유연화를 통해 소비자(발주자)의 선택 확대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14

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 성장촉진지역 등...보조금 관리 강화·체감도 높은 지역개발 기대

□ 국토교통부는 현장중심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16년 1월부터 소관 지역개발사업의 예산교부, 집행점검, 경미한 사업변경 등 관리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 원활한 관리업무 위임을 위해 10월중 위임업무 고시를 추진하고 연내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협조하에 구체적인 위임을 준비할 계획이다.

○ 이번 위임추진은 「지역개발지원법」 제정('15.1.1시행)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 지역주도형으로 전환된 점과, 최근 국고보조금 집행관련 보조금 관리강화 추세 등을 반영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년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지방국토청장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등 지역주도의 사업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며,

*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시도 담당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다른 계획 및 사업간 유사중복사업 배제 등 업무 수행(지역개발지원법 제42조)

- 한편으로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현장기반의 상시적 사업관리점검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금번에 위임되는 지역개발사업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과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거점지역**개발사업이 해당되며,

* 생활환경·개발수준 저조로 기반시설 구축 등에 국가의 배려가 필요한 지역

** 산업·교통 등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어 인근지역과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

○ 관리업무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교부 및 결정취소, 집행실적 점검,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심사, 집행잔액 반환 등 처리, 경미한 사업변경, 사업대장관리 등 보조금 집행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 앞으로 지역특성을 잘 아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개발사업관리를 수행할 경우 신속한 사업추진은 물론, 도로·하천 등 국토관리청 기존 업무와 인근 지자체 업무를 상호 연계발전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 아울러 현장중심의 사업관리로 보다 철저한 국고보조금관리와 함께, 지방국토관리청의 다양한 지역정보를 토대로 주민체감도가 높은 지역개발정책 수립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지역경제과
(044)201-3667

주거용 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 부담 줄어 든다

▶ 건축물 점용료 인하 ... 점용료 상승폭도 연간 10%로 제한

(사례1)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받는 반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B씨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납부함

⇒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진출입로에 대하여도 주거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 면적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절반 감면

(사례2) 주유소를 운영하는 P씨는 진입로 점용료로 매년 200만원을 납부했는데, 최근 토지가격이 2배 상승하면서 점용료가 22% 증가한 244만원을 납부하게 됨

⇒ 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10%로 제한되어 220만원을 납부하게 됨

□ 주거용 오피스텔에 진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 또한,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최대 10%로 제한되어 점용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인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

□ 이번 개정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감면·인하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

-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

○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층수별 5~6.5%차등 → 일률적 4%)

- '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

○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단일화(10~30%차등 → 조정10%)

- 타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 높은 이용가치등을 감안하여 10%로 하향·단일화

■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0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추진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10.13(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토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기간: '15.10.13~11.23)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근거 마련]

- 기획재정부는 '16년 시행을 목표로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

* 최저가낙찰제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함에 따라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 문제점 야기

-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등)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써

- 주요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최적가치낙찰제의 한 형태임

- 이번 개정안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근거 및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12월까지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임

[경제활성화]

- 중소기업 지원 [“노사정 대타협(9.15)” 후속조치]

- 5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을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토록 개선

-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강화(3개월→6개월)

□ 지역경제 활성화

- 금년말 일몰종료되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일몰시한을 '17.12.31까지 2년간 연장

*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를 20%~40% 포함한 컨소시엄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제도

[담합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근거 마련]

- 담합업체 등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시 발주기관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위반행위 발생시 일정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제도 → 발주기관은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입증부담 없이 민사책임 추궁 가능

-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6.1.1부터 시행할 예정

-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지역업체 지원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 자료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044)215-5214

부처 간 협업으로 건설현장 안전취약지대 없앤다

▶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건설현장 안전대책 보고”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0월 21일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건설분야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건설업 재해율 `14년 0.73(전체산업 0.53), `13년 0.92(전체산업 0.59)

- 그동안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 `10년 ~ `13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재해율이 작년에 다소 감소(0.92 → 0.73)하였으나,

*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대책(`14.3, 고용부),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14.7,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14.12, 국토부)

- 최근 부평 타워크레인 전도(`15.9), 동대구역 슬래브 붕괴(`15.7) 등 대형 건설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재해강도가 높은 가설구조물과 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이번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기존과 차별되는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내놓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려 한다.

□ 이번 ‘건설현장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시공단계로 국한되었던 안전관리 업무를 설계, 발주단계로 확장하고, 시공 중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건설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미리 제거하는 안전설계(Design for Safety)를 수행하고, 그 적정성을 발주자가 검토·승인*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 발주기관(발주자가 민간일 경우 시설안전공단)이 설계도면의 안전성을 검토·승인

- `16년부터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시행함으로써, 사업자의 안전역량을 감안하여 시공자를 선정토록 하고

*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해당 업체의 재해율, 건설사고 발생 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낙찰자 선정시 반영

- 또한, 작업 전 감리자 승인을 의무화하는 「작업허가제」와 공정별로 작업자를 기록·관리하는 「작업실명제」를 도입하여 ‘先안전 - 後시공’의 원칙을 준수하는 건설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둘째, 건설공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제도와 새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감리원을 선임토록 하는 등 감리 제도를 정비하고, 현행 예고식(3일전 통보) 점검제도를 불시점검이 가능토록 개정하여 **제도의 현장 이행력을 강화**한다.

- **셋째**, 재해강도가 강한 **가설구조물 및 건설기계**와 건설사고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전략적 집중관리**를 통해 사고율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가설공사를 포함**시키고, **가설자재 임대업체에 대한 합동(국토부·고용부) 특별점검**을 매년 실시하여 불량제품의 유통 및 사용여부를 감시하고,

- **위험공종* 및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행**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 확대를 위해 “**안전신문고**”의 활용 및 “**안전신고 포상제**” 도입을 검토하며,

- * 5m 이상의 동바리, 2m 이상의 흠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등

-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량 건설자재의 유통·사용 근절을 위해 **주요 건설재료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 현재 경찰과 공동으로 품질관리실태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 중(1차점검, ‘15.8)

- **넷째**, 건설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관계자의 안전역량 및 책임을 강화하여 **건설안전문화 및 기반을 조성**한다.

- * 안전관련비용을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관행

- 설계변경 및 공기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 시 반드시 **안전관리비도 증액**토록 법제화하여 안전관리비의 부족을 방지하고,

- 발주기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건설주체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건설사고를 초래한 자에게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 유일호 장관은 “이번 ‘**건설현장 안전대책**’의 핵심은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국토부와 고용부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제도의 **현장 실천력을 높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데 있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6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국토부 고시)을 마련하여 10월6일부터 20일간(기간 10.6~10.26)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하, 「하자판정기준」 으로 표기

○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14.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와 시공사 간 하자분쟁도 상존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따라, 하자분쟁에 따른 하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자판정기준」을 '14.1월 제정하였으며,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반복된 민원사항,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동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다.

※ 주요 개정내용

○ 규정미비 사항 개선

- (일반기준) 시공하자 용어정의, 설계도서 적용기준 등 마련
- (민원해소)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을 구체화
- * 예) 타일공사 → 타일공사, 테라코타공사, 대리석공사 등

○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신설·보완

- (신설) 마감균열, 창호기능불량, 감시제어설비, 에어 덕트 미장 미시공, 난방배관 온도조절 등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 (보완) 결로하자 구체화(벽체·창호로 구분), 주방싱크대 하부마감, 욕실문턱 높이, 조경수 고사, 타일 들뜸의 판단기준 등

○ 법원 판례 등을 고려

-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도면과 시공상태를 비교 측정하되,
·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과 비교하여 측정

○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사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6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시지가의 상승 및 부동산시장수익률 저하에 따라 건축물 점용료 요율을 인하하고, 점용료 인상폭을 연간 10%로 제한하는 한편, 기부채납부지 및 준주택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점용료 조정산식 개선(안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 나. 기부채납부지 및 준주택 통행로에 대한 점용료 감면 (안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 다. 건축물 점용요율 인하(안 별표 3 제3호)

3. 의견제출

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로 2015년 11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0, 3916, Fax 044-201-5591)

■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표지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표지의 과다설치 방지 및 간소화 등을 통해 예산절감과 도로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도로명주소 시행에 부응하기 위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로명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로표지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 나. 도로표지규칙이 적용되는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다. 도로표지의 안내방식을 지명 안내표지, 도로명 안내표지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점 안내표지에 같음하여 도로명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도로관리청은 안내방식에 따라 안내명을 선정하고 도로안내명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도로표지의 안내방식에 따른 도로표지판·글자 및 지주의 규격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규정되지 않은 형식의 도로표지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 바. 도로표지의 영어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도로명의 영어표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3항)
- 사. 도로표지의 설치형식을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현수식, 문형식 및 부착식 등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시설물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 아.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도로표지의 설치 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 자. 지점 안내표지를 도로명 안내표지로 교체 등 도로관리청이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도로표지규칙』 전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로 **2015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044-201-3912, 팩스 044-201-5591)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사법 시행령>

1. 개정이유

건축사보 자격기준 추가 및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건축사법 일부 개정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2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시간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사보 자격기준 추가(안 제2조의3 신설)

건축사보 자격기준을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전문대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고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까지 추가함.

나.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시험면제 횟수 완화(제11조 단서 개정)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은, 그 시험 직후 시행되는 그 과목에 대한 면제 횟수를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로 조정

다. 건축사 갱신등록 등에 따른 실무교육시간 조정(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위해 5년간 60시간 받는 실무교육시간을 40시간으로 조정 등.

라. 건축사공제조합 운영에 필요한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 보증 대상 및 내용 등 신설(안 제35조부터 안 제35조의7까지 신설)

- 1) 정관 기재사항으로 공제조합 정관에 정할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출자금, 자산 및 회계 사항, 총회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5조)
- 2) 공제조합 등기시 필요한 사항(목적, 사업, 출자, 임원, 대표권 제한, 대리인 등)을 정함(안 제35조의2)
- 3) 조합의 총출자금은 출자자의 액면총액으로 하고,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함(안 제35조의3)
- 4) 조합이 보증하는 사항(입찰, 계약 보증 등)과, 각 보증의 내용 등은 약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의4)
- 5) 조합이 보증하는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하고,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함(안 제35조의5)
- 6)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함(안 제35조의6)
- 7)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방법 및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5조의7)

<건축사법 시행규칙>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 건축사 자격 시험 응시수수료 규정을 규칙으로 이관하는 등 건축사 신고확인증 반납 등 불합리한 규정 폐지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반납 규정 폐지(안 제3조제5항 삭제)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재발급받은 후 잃어 버렸던 건축사 신고확인증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 확인증을 건축사협회에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 폐지

나.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규정(안 제10조제1항 신설) 등

3. 의견제출

이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2015년 11월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전화 : 044-201-3776, 팩스 044-201-5574)

■ 자료 : 국토교통부

한옥 건축 기준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한옥 건축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바, 한옥 정체성 제고 등을 통한 한옥 활성화를 위해 해당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한옥의 건축적 특성상 따로 규정이 필요한 ‘한식지붕틀’, ‘처마선’ 및 ‘처마깊이’를 별도로 정의함
 - ① (한식지붕틀) 보, 도리, 서까래의 순서로 시공되는 우리나라 전통양식의 지붕구조
 - ② (처마선) 처마의 가장 바깥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선
 - ③ (처마깊이) 외벽 기둥들의 중심을 이은 선으로부터 처마선에 이르는 수평거리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 건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기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다. 주요구조부(안 제4조)

-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구조부재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기둥, 한식지붕틀 등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구조부재의 개수는 15개 이내로 하되, 건축물 전체 구조부재 외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음
- 구조부재에 사용하는 목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품질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외기에 접하는 목재에는 방습·방부·방염 등을 위한 조치를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목재 기둥은 기단 및 주춧돌 없이 지면 위에 직접 세우지 않도록 함

라. 지붕 (안 제5조)

- 지붕은 한식기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처마깊이는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함 (지역적 특성상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처마물 등으로 인접 대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눈썹지붕은 안전 확보를 위해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함

마. 외벽 및 창호 (안 제6조)

- 건축물 외벽에 계획된 목재 부재는 잘 보이도록 설치하며, 이를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함
-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 면보다 안으로 들어 설치하고, 각 층은 목재 마감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구분하기 쉽도록 함
-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를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단열성능 저하를 최소화하여야 함

바. 설비 (안 제7조)

- 바닥난방 부위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단열재의 위치를 적절히 계획하고, 냉·난방 및 조명기기 등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함
- 외부로 노출되는 건축설비 및 부착물은 적절히 차폐하여야 함

사. 마당 및 담장 (안 제8조)

- 마당은 적절한 구배를 두거나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 담장은 처마선 중 가장 낮은 높이 이하로 설치하며, 지표면으로부터 2.1미터를 넘을 수 없음

3.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

해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15.10.21 ~ 11.10)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가. 예고기간/홈페이지: '15. 10. 21 ~ 11. 10 / <http://www.molit.go.kr>

나. 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 3) 그 밖의 사항 등

다. 의견 보내실 곳

- 1) 소속: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
- 2)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 3) 전화/팩스: 044-201-3779, 3783 / 044-201-5574
전자우편: kimss4297@molit.go.kr

■ 자료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택의 이축 요건을 철폐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로 완화하여 사업인정 고시 이후 매입한 경우에도 취약지구 외 자기소유 토지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약지구외 자기소유 토지로의 주택 이축요건 완화[안 별표 1제5호다목다)③]

1)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폐되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그 주택의 소유자는 취약지구 외 자기소유 토지로 이축할 수 있었으나,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철폐당시 주택을 소유한 자(보상금을 수령한 자)에 해당하면 취약지구 외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이축시 취약지구 외 자기 소유토지로의 이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2. 6.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행	개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 자료 : 국토교통부

신기술 정보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공법(아트봇 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로보프린트 외 1개사
-------	----------------

2. 신기술 개요

- 지정번호 : 제 771 호
- 명 칭 :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공법(아트봇 공법)
- 기술분야 : 건설>도장
- 내용요약

(1) 범위

총전식 4색도료를 DOT 분사하는 프린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대형이미지를 분할출력하고, 3방향 이동이 가능한 헤드부의 변위 추종기능으로 비정형구조물에 도막을 형성하는 도장로봇을 사용한 건설공사 자동화 도장공법

(2) 내용

이 신기술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도장로봇을 이용한 건축물 도장공법으로 대형이미지 실사도장이 가능하고, 비정형 구조물에도 도장 가능한 건축물 도장공법이다. 이미지를 편집하는 편집스테이션, 지정된 이미지를 그리기 위하여 벽면에 도료를 분사하는 프린팅스테이션, 도장로봇을 지정된 시공위치에 양중·고정하는 양중스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곤돌라 고정	2. 프린터 조립
	
3. 프린터 위치 잡기	4. 도료 분사
	
5. 작업완료	6. 장비 반출

2015년 제8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심의일자 : 2015. 10. 23.(금)
- 건 명 : 2건(입찰안내서 1건, PQ 1건)

의안번호	발주청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심의의결)
2015-08-01	경남 개발공사	창원현동 A-3BL 공공분양주택 건립공사(입찰안내서) 사업개요 : 434세대, 557억 원	조건부 채택
2015-08-02	사천시 (도로과)	사천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조건부 채택

2015년 제9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계획

- 심의일자 : 2015. 11. 27.(금)
- 건 명 : 4건(실시설계 3건, PQ 1건)
- 실시설계 적정성 심의 3건

의안 번호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발주청
2015-09-01	합천 울곡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 위 치 : 합천군 울곡면 일원 · 사업내용 : 배수본관 L=29.72km(D80~250mm) 배수지관 L=29.45km(D50~75mm),가압장 8개소 · 사 업 비 : 149억 원 · 사업기간 : 2016 ~ 2018년(3년)	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
2015-09-02	합천 용주가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 위 치 : 합천군 용주면 일원 · 사업내용 : 하수처리시설 660m ³ /일 오수관로 L=11.21km(D80~200mm) 배수연결관 L=12.41km(D100~150mm) · 사 업 비 : 112억 원 · 사업기간 : 2016 ~ 2018년(3년)	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
2015-09-03	양산 석계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위 치 :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일원 · 사업내용 : 진입도로 L=1.33km(B=20m) 국도 가감속차로 L=1.08km(B=7~10.5m) · 사 업 비 : 109억 원 · 사업기간 : 2016 ~ 2017년(2년)	양산시 (산단조성과)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1건

의안 번호	안 건 명	발주청
2015-09-04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진주시 (농정기획과)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를담당
(055)211-2926

계약심사 현황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5년 10월	계		47	51,311	48,369	2,942	5.73%
	공사	토목	16	32,535	31,079	1,456	4.47%
		건축	4	7,963	7,409	554	6.95%
		기타	4	3,525	3,316	209	5.93%
	용역		11	6,343	5,646	697	10.98%
	물품		12	945	919	26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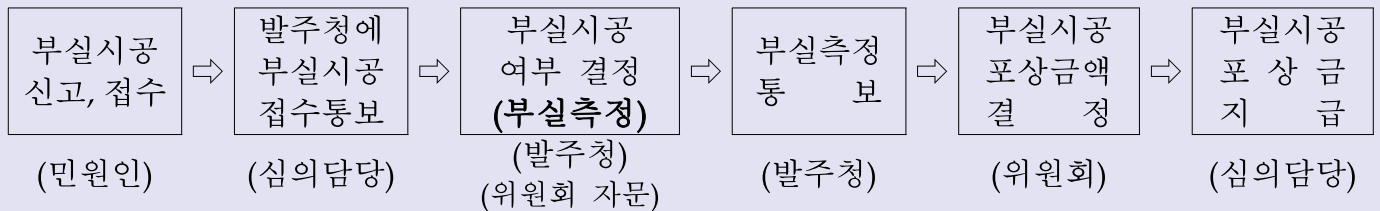
■ 자료 : 도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055)211-3848

□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

I. 부실시공 신고대상

- 경상남도(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한 경상남도(www.gsnd.net) 및 건설정보(www.gnci.gsnd.net)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는 도급액 50억이상 건설공사

II. 처리절차



III. 포상금 지급기준

부실시공등급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과한 부실벌점	포상금 지급기준
1 등급	벌점 3점	500만원 이하
2 등급	벌점 2점	300만원 이하
3 등급	벌점 1점	100만원 이하
해당없음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로 시정이 가능한 경우 및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없음

※ 부실벌점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8

IV. 신고방법(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함)

- 전화신고 후 관련서류 송부(우편 또는 방문신고) : 055-211-2922~2926
- 팩스를 이용한 신고 : 055-211-2919
- 신고서식 : 상기 홈페이지에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 2015 전국 VE 경진대회 및 컨퍼런스 안내

1. 일시/장소 : '15.11.25(수) 10:00 ~ 17:00 / K-water 수도권지역본부 2층 대강당
2. 주 최 : 국토교통부
3. 주 관 : K-water·한국건설VE연구원·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4. 추진일정

VE 경진대회(제1부)		VE 컨퍼런스(제2부)	
추진내용	일 정	추진내용	일정
- 실시계획 공고 (관보게재의뢰)	'15.10.19	- 논문·사례 발표 사전 모집	10월 중
- 신청서 접수	'15.10.26 ~ 11.4(10일)		
- 심사(서류심사 및 설명회)	'15.11.9 ~ 11.20(12일)	- 사전심사 및 발표작 결정	11월 중
- 수상작 발표회 및 시상	'15.11.25	- 논문·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15.11.25

- * 대회당일 경진대회 성황유도를 위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VE를 통한 신기술·신공법 적용한 건설신기술전시회 병행 시행
- * 컨퍼런스 관련 상세 일정은 한국건설VE연구원 홈페이지 게재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71

□ 국토교통부 “지능형 교통신호 시스템” 명칭 공모 안내

1. 공모기간 : 2015년 11월 2일 ~ 11월 15일(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2. 공모주제 : 지능형 교통신호 시스템 명칭 공모
 - “지능형 교통신호 시스템”의 명칭 공모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홍보가 용이하도록 새로운 명칭을 공모함
3. 응모방법
 - 페이스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이름과 이름에 대한 설명 남기기
 - 페이스북 홈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landkorea>
4. 심사방법 :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7명의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5. 결과발표 : 2015년 11월 25일 예정 - 페이스북페이지에 게시 및 이메일을 통한 개별고지
 - 상품내역
 - 대 상(1명) : 애플워치 (80만원상당)
 - 금 상(1명) : 액션캠 (40만원상당)
 - 은 상(5명) : 쇼핑문화상품권 (5만원상당)
 - * 선정된 명칭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법적권리는 국토교통부에 귀속됩니다.
 - * 담당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김창기 사무관 (044-201-3934)
6. 신청서 양식 - 페이스북 이벤트 응모페이지 온라인설문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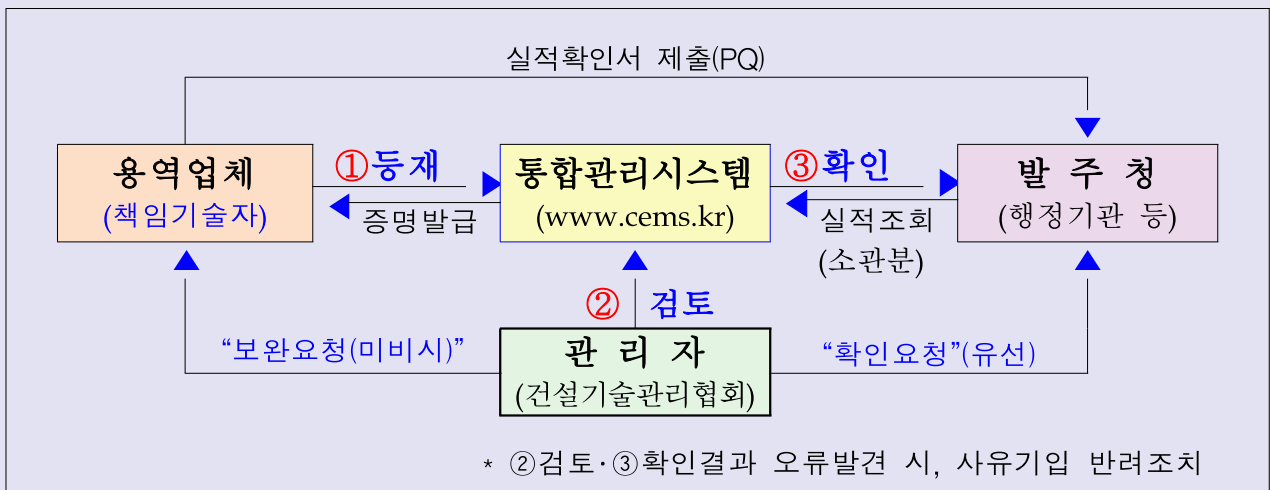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지능형 교통신호 시스템 명칭 공모	
성 명	
이 메 일	
제안명칭	
제안설명	

■ 자료 :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044)201-3934

□ 「건설기술용역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안내

- 관련 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 입력대상 용역 : 설계, 감리, CM 등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 입력시기 : 용역의 계약체결 후, 설계 변경 후, 준공 후 10일 이내 기술자 변경시 즉시 입력
- 시스템 사용자 :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사업관리담당자
용역사 대표자 및 용역책임자(원도급·하도급)
- 시스템 접속 URL : www.cems.kr
- 참고 :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되는 '14. 5. 23. 이후는 본 시스템을 통하여만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실적 관리 및 확인 가능함.
- 주요 조회가능 항목
 - 건설기술용역 수주 및 수행실적(규모별, 공종별, 업체별)
 - 참여기술자 현황(중복배치, 중첩도, 교체현황 등)
 - 건설사업관리업체에 대한 교체빈도
 - 제재현황(영업정지, 과징금, 벌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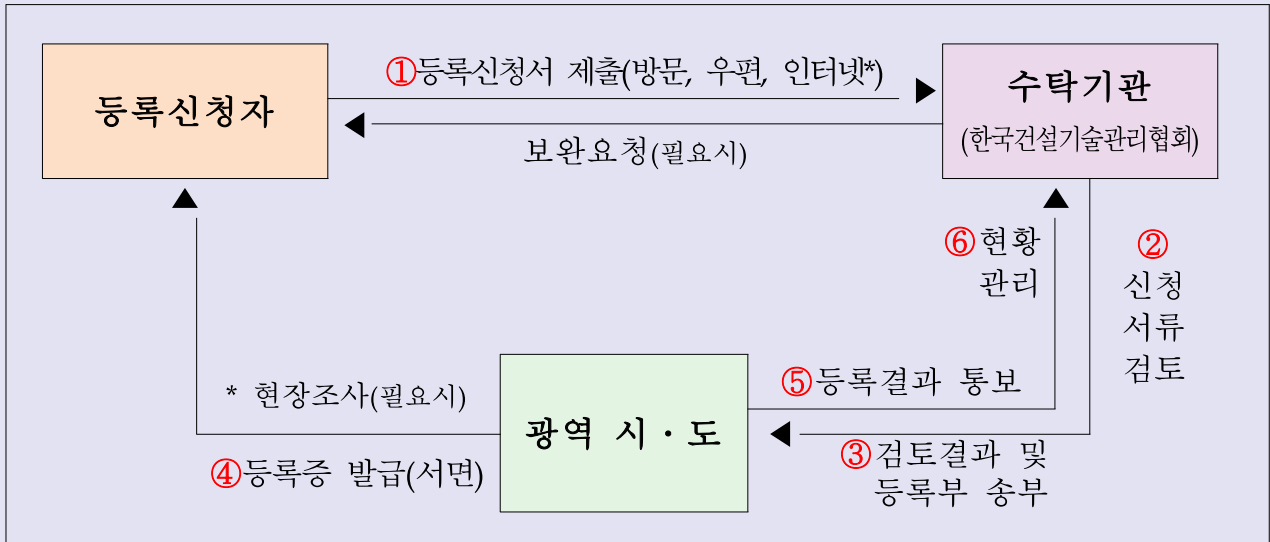
※ 용역실적 등재·관리 절차



■ 자료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지원실
(02)3460-8641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안내

- 2014. 5. 23.자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등의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단일화 되었으며, 이와 관련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민원의 접수·확인 및 관리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 <① 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신청인)
- <② 단계> : 신청서 접수, 고유 관리번호 부여, 서류 검토(관리협회)
- <③ 단계> : 등록서류 검토결과 통보(관리협회→해당 시·도)
- <④ 단계> : 등록증 발급(해당 시·도→신청인)
- <⑤ 단계> : 등록결과 통보(해당 시·도→관리협회)
- <⑥ 단계> : 등록결과 접수, 용역업자 등록번호 등재·관리(관리협회)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2926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지원실
(02)3460-8654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재 요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2923~6

FAX : (055)211-2919

e-mail : kyr4874@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